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73호 2020. 10. 21.(수)

거창후예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0-116호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
제2020-117호 도로명주소 고시 ····· 11

공 고

제2020-1329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 - 116호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거창군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고제면의 잠재력과 지역 고유의 테마를 살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 5,950백만원(국 4,165, 도 535, 군 1,25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 어울림센터조성, 어린이돌봄센터리모델링,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중심지가로 개선, 거창저수지주변 산책로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등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수탁)
6. **사업시행기간** : 2018. 1. ~ 2022. 12.(5년)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940-8273)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940-5546)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토지》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어울림 센터	1	고제	농산	748	1	답	878	878	거창군		수용
	2	고제	농산	748	2	답	787	787	거창군		수용
	3	고제	농산	755	3	답	78	16	거창군		수용
	4	고제	농산	1855	12	답	10	10	거창군		수용
	5	고제	농산	1855	13	답	23	11	거창군		수용
	6	고제	농산	1855	14	전	7	7	거창군		수용
	7	고제	농산	758	3	답	36	36	거창군		수용
	8	고제	농산	1855	17	답	95	42	거창군		수용
	9	고제	농산	1855	18	답	17	17	거창군		수용
	10	고제	농산	747		답	119	119	거창군		수용
	11	고제	농산	750	6	창	191	191	거창군		수용
마을안길 정비사업	12	고제	농산	201	4	도	544	217	국(건설부)		사용
	13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393	국(건설부)		사용
	14	고제	농산	1855	8	구	25	1	국(농림수산부)		사용
	15	고제	농산	1871		도	754	87	국(건설부)		사용
	16	고제	농산	781	1	도	203	5	국(건설부)		사용
	17	고제	농산	754	7	도	1,165	53	국(건설부)		사용
	18	고제	농산	746	3	도	111	7	국(건설부)		사용
	19	고제	농산	1856		도	998	356	국(건설부)		사용
	20	고제	농산	753	4	대	1,266	6	국(경찰청)		사용
	21	고제	농산	1856	1	대	231	0.02	국(건설부)		사용
	22	고제	농산	1855	7	도	21	10	국(건설부)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 정비사업	23	고제	농산	188	8	도	1,458	0.20	국(건설부)		사용
	24	고제	농산	186	7	도	78	12	국(건설부)		사용
	25	고제	농산	1851	3	구	441	8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6	고제	농산	1861		도	312	238	국(건설부)		사용
	27	고제	농산	1857		구	194	90	국(농림수산부)		사용
	28	고제	농산	207	1	대	109	1.00	국(기획재정부)		사용
	29	고제	농산	213		구	6,176	202	국(농림수산부)		사용
	30	고제	농산	1876		구	632	69	국(농림수산부)		사용
	31	고제	농산	1876	2	구	70	67	국(농림수산부)		사용
	32	고제	농산	1880		도	108	45	국(건설부)		사용
	33	고제	농산	1879		도	99	8	국(건설부)		사용
	34	고제	농산	1875		도	827	86	국(건설부)		사용
	35	고제	농산	200	5	대	136	117	거창군		사용
	36	고제	농산	1854	7	대	36	1	거창군		사용
	37	고제	농산	200	9	대	40	25	거창군		사용
	38	고제	농산	1854	8	대	26	6	거창군		사용
	39	고제	농산	1855	5	대	22	1	거창군		사용
	40	고제	농산	251	1	대	150	150	거창군		사용
	41	고제	농산	201	5	대	41	37	거창군		사용
	42	고제	농산	184	3	학	152	5	거창군		사용
	43	고제	농산	252		체	2,009	81	거창군		사용
	44	고제	농산	253		전	1,512	58	거창군		사용
	45	고제	농산	254		창	392	77	거창군		사용
	46	고제	농산	680	2	도	20	12	거창군		사용
	47	고제	농산	산93	1	도	49	12	거창군		사용
	48	고제	농산	산92	2	도	64	25	거창군		사용
	49	고제	농산	산92	1	도	30	2	거창군		사용
	50	고제	농산	682	2	도	73	45	거창군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 정비사업	51	고제	농산	702	2	도	152	55	거창군		사용
	52	고제	농산	686	2	도	83	65	거창군		사용
	53	고제	농산	702	4	도	4	1	거창군		사용
	54	고제	농산	704	4	도	16	12	거창군		사용
	55	고제	농산	687	2	도	60	16	거창군		사용
	56	고제	농산	687	6	도	3	3	거창군		사용
	57	고제	농산	687	8	도	27	9	거창군		사용
	58	고제	농산	687	9	도	32	24	거창군		사용
	59	고제	농산	690	1	도	54	9	거창군		사용
	60	고제	농산	208	1	대	536	5	대○○○○○○○○회(고신)총회유지재단		사용
	61	고제	농산	211		대	208	9	대○○○○○○○○회(고신)총회유지재단		사용
	62	고제	농산	211	1	대	67	0.1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3	고제	농산	208	3	대	327	6	대○○○○○○○○회(고신)총회유지재단		사용
	64	고제	농산	208	5	대	49	44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5	고제	농산	208	4	도	150	105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6	고제	농산	208	6	차	49	3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7	고제	농산	690		답	105	36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8	고제	농산	786		대	284	22	이○영 외 3인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사용
	69	고제	농산	785		대	192	18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사용
	70	고제	농산	787		대	152	1	이○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사용
	71	고제	농산	783		대	351	33	박○래		사용
	72	고제	농산	759	6	답	268	84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9번길	사용
	73	고제	농산	759	7	도	56	1	배○주		사용
	74	고제	농산	779		답	268	84	이○두	경남 양산군 철마면 고촌리	사용
	75	고제	농산	780		대	291	63	이○순		사용
	76	고제	농산	772	2	답	668	50	배○주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정비사업	77	고제	농산	773	3	답	780	55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9번길	사용
	78	고제	농산	777		대	651	26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9번길	사용
	79	고제	농산	775		대	347	12	유○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사용
	80	고제	농산	784		대	317	1	이○영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사용
	81	고제	농산	746	1	도	205	15	진○이		사용
	82	고제	농산	746	4	답	226	59	류○성		사용
	83	고제	농산	746	2	대	394	3	류○성	거창읍 상림리	사용
	84	고제	농산	산12	1	임	15,273	20	전○탁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사용
	85	고제	농산	산10		임	146,876	192	덕수이씨덕온종중		사용
	86	고제	농산	178		전	2,102	0.3	이○이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278번길	사용
	87	고제	농산	205	1	대	145	4	박○규		사용
	88	고제	농산	1861	1	대	61	0.4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사용
	89	고제	농산	209		대	60	10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사용
	90	고제	농산	산95	5	도	384	276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91	고제	농산	680	1	전	76	64	박○화		사용
	92	고제	농산	산95	4	도	86	58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93	고제	농산	산95	35	임	3,255	14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94	고제	농산	산95	1	임	9,368	54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95	고제	농산	682	1	대	367	82	유○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사용
	96	고제	농산	686	3	대	304	7	김○영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사용
	97	고제	농산	702	3	답	30	27	박○원		사용
	98	고제	농산	703	4	도	12	9	백○흠		사용
	99	고제	농산	703	2	도	43	9	백○흠		사용
마을안길정비사업	100	고제	농산	704	3	도	10	5	이○복		사용
	101	고제	농산	산95	6	도	163	100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102	고제	농산	687	5	답	223	47	강○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용
	103	고제	농산	689		대	450	55	강○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104	고제	농산	688	3	대	304	29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105	고제	농산	705	1	임	307	52	이○존	거창읍 상림리 367-3	사용
	106	고제	농산	687	1	대	50	9	이○만		사용
	107	고제	농산	201	2	도	155	21	미등기		사용
	108	고제	농산	200	2	도	469	52	미등기		사용
	109	고제	농산	251	2	도	251	57	미등기		사용
	110	고제	농산	200	4	도	36	8	미등기		사용
	111	고제	농산	745		답	119	2	미등기		사용
	112	고제	농산	752	1	대	162	17	미등기		사용
	113	고제	농산	752	2	도	17	5	미등기		사용
	114	고제	농산	204	2	도	109	46	미등기		사용
	115	고제	농산	203	5	도	307	125	미등기		사용
	116	고제	농산	203	3	도	63	17	미등기		사용
	117	고제	농산	203	7	도	327	200	미등기		사용
	118	고제	농산	202	2	도	248	137	미등기		사용
	119	고제	농산	188	3	도	205	53	미등기		사용
	120	고제	농산	188	10	도	616	0.4	미등기		사용
	121	고제	농산	687	7	도	137	73	미등기		사용
	122	고제	농산	706		대	112	24	미등기		사용
	123	고제	농산	688	1	대	7	4	미등기		사용
중심지가로	125	고제	농산	233	3	임	883	58	미등기		수용
	126	고제	농산	232	2	도	235	34	미등기		수용
	127	고제	농산	231	2	도	754	97	미등기		수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개선사업	128	고제	농산	224	2	도	1,031	113	미등기		수용
	129	고제	농산	1935		구	1,626	9	국(농림수산부)		사용
	130	고제	농산	250	4	도	489	73	미등기		수용
	131	고제	농산	249	8	도	579	19	국(건설부)		사용
	132	고제	농산	250	3	도	13	3	박○일		수용
	133	고제	농산	249	4	도	714	84	미등기		수용
	134	고제	농산	250	2	도	13	4	미등기		수용
	135	고제	농산	1851	3	구	441	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36	고제	농산	188	5	도	73	2	미등기		수용
	137	고제	농산	188	10	도	616	96	미등기		수용
	138	고제	농산	188	3	도	205	3	미등기		수용
	139	고제	농산	188	8	도	1,458	85	국(건설부)		사용
	140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62	국(건설부)		사용
	141	고제	농산	746	1	도	205	40	진○이		수용
	142	고제	농산	1856		도	998	2	국(건설부)		사용
	143	고제	농산	1855	19	구	1,856	120	국(농림축산픽품부)		사용
	144	고제	농산	742	1	도	255	26	거창군		사용
	145	고제	농산	789	2	도	122	14	김○옥	궁항리	수용
	146	고제	농산	790	3	도	86	19	미등기		수용
	147	고제	농산	790	4	답	36	1	유○옥	부산진구 백양대로 260번길	수용
	148	고제	농산	791	2	도	79	5	미등기		수용
	149	고제	농산	791	3	도	7	6	국(건설부)		사용
중심지가로 개선	150	고제	농산	740	2	도	231	11	미등기		수용
	151	고제	농산	796	3	도	53	9	국(건설부)		사용
	152	고제	농산	796	2	도	486	29	미등기		수용
	153	고제	농산	737	1	도	409	76	국(건설부)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사업	154	고제	농산	746	3	도	111	4	국(건설부)		사용
	155	고제	농산	745		답	119	11	미등기		수용
	156	고제	농산	744		답	86	15	미등기		수용
	157	고제	농산	1856		도	998	2	국(건설부)		사용
	158	고제	농산	1855	19	구	1,856	1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9	고제	농산	743		대	83	24	미등기		수용
	160	고제	농산	742	6	답	41	10	이○택	개명리	사용
	161	고제	농산	742	5	답	350	50	이○주	농산리	사용
	162	고제	농산	1873		도	423	60	국(건설부)		사용
	163	고제	농산	742	2	답	135	9	이○주	배재로	사용
	164	고제	농산	741		답	126	34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5	고제	농산	741	1	답	56	9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6	고제	농산	1873	1	도	21	5	국(건설부)		사용
	167	고제	농산	1855	29	구	69	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8	고제	농산	740	7	답	144	11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9	고제	농산	739		답	374	29	김○영	경기 의정부시 효자로	수용
	170	고제	농산	737		답	1,818	25	이○노	농산리	수용
	171	고제	농산	1872		도	446	144	국(건설부)		사용
	172	고제	농산	737	2	답	211	5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거창저수지	173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31	국(건설부)		사용
	174	고제	농산	1212	1	도	1,703	27	국(국토교통부)		사용
	175	고제	농산	1208	2	도	66	3	거창군		사용
	176	고제	농산	1208	3	도	7	1	거창군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177	고제	농산	1901		구	1,342	2	국(기획재정부)		사용
	178	고제	농산	1905		도	443	2	국(건설부)		사용
	179	고제	농산	1195	7	도	17	2	거창군		사용
	180	고제	농산	1208	1	답	867	3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1	고제	농산	1207	1	답	1,291	34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2	고제	농산	1206	1	전	63	2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3	고제	농산	122	3	임	3,414	287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4	고제	농산	124	2	임	1,577	58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5	고제	농산	124	6	도	201	5	국(건설교통부)		사용
	186	고제	농산	124	5	도	3,088	10	국(건설교통부)		사용
	187	고제	농산	1189	3	도	5,015	211	국(건설교통부)		사용
	188	고제	농산	197	6	도	236	15	국(건설교통부)		사용
	189	고제	농산	1185	1	도	163	7	국(건설교통부)		사용
	190	고제	농산	1195	1	답	825	67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마을회관 리모델링		고제	농산	753	10	대	308	308	고제면입석마을회		사용
돌봄센터 리모델링		고제	농산	757	5	답	329.4	329.4	거창군		사용
계								11,028.82			

거창군 고시 제2020 - 11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2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79-267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885-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79-267	20091228	20201021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194-9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온곡길 19	20090401	20201021	겨울에도 따뜻하고 아늑하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205-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응달길 96-9	20090401	20201021	길이 응달지역에 있어서 예로 부터 불려졌던 길이름에서 유래된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21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후방길 86	20090401	20201021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5-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27	20160420	20201021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0-1329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인구증가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증가도시를 실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가 신설함(안 별표)

1) 영유아 양육지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2) 전입지원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3) 그 밖의 지원 :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4. **입법예고기간** : 2020. 10. 19. ~ 2020. 11. 9.(20일간)

5.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9.(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전화 055-940-8882, 팩스 055-940-8709 또는 메일 shinck04@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전화 055-940-88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개정전문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영유아양육지원 과일퓨레이유식지원란 다음에, 전입지원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지원란 다음에, 그 밖의 지원 청년주택전세·구입 자금 이자지원란 다음에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제3조 관련)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영유아 양육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창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6세 미만 신입생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가방 등) 1회, 10만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군에 주소를 둔 8개월 미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
전입 지원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하는 고등학생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6학기 지원
그 밖의 지원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군에 있는 민박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등을 말한다)	주거비, 체험비 등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서

기 본 현 황						
신청분야	□ 임신·출산, 양육 □ 학자금, 전입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					
출산 양육	□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자녀 성명	생년월일	자녀 수	자녀 성명	생년월일	자녀 수
다자녀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구비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자녀 수	자녀 중 째		신청인과의 관계		
	학자금신청	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				
학자금 전입	전입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대학생	학교명		학과명			
	□전입고등학생 장학금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전입대학생 학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정착금·기념품 □빈집정비 지원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문화예술 관람권 □전입대학생 장학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대학생 학자금과 생활관비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 고등학생학자금 납입영수증,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붙임 3]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세대”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군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과 지원 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읍·면장과 군수는 신청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제3조 관련)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지원	임신축하 기념품	거창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	10만원 이내 지원
	임산부 영양제		임신 5개월부터 최대 7개월분 지급
	엽 산 제		가. 임산부는 신청일부터 임신 16주까지 산정하여 지급 나. 가임여성은 5개월분 일괄지급, 임신 때까지 추가 가능
	출 산 축 하 금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가. 첫째 100만원 나. 둘째 200만원 다. 셋째 이후 250만원
	출 산 장 려 금	셋째 이후 자녀를 군에 출생신고 하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셋째 이후 50만원
영유아 양육 지원	양 육 지 원 금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가. 첫째, 둘째: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0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나. 셋째 이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급 다만, 출생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과일퓨레 이유식 지 원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세대로서 부 또는 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한 세대에 연간 4박스
	어 린 이 집 입 학 준 비 금 지 원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창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6세 미만 신입생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가방 등) 1회, 10만원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군에 주소를 둔 8개월 미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
다자녀 지원	세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대상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
전입 지원	전입정착금	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	가. 1인 세대 1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 나. 2인 세대 20만원 다. 3인 세대 30만원 라. 4인 이상 세대 50만원
	전입기념품 (축하카드) 발송		2만원 상당의 전입기념 물품 또는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전입신고 시 한 번, 20리터 45매 이내 다만, 1명 전입 시 22매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		전입신고 시 1명 한 번, 공연티켓 교환권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	전입세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다만, 1명 전입 시 150만원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한 번, 10만원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 재학 중 최대 4학기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대학 생활관으로 전입하는 대학생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4학기 지원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하는 고등학생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6학기 지원
그 밖의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군민	1명 50만원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로 다음의 대상별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1)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2)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 3)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가. 지원 금액: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 대출 잔액 이자의 1.5퍼센트 이내. 다만,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1)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2)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3) 전입세대: 최대 50만원 나. 지원기간: 연 한 번, 최대 세 번 지원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군에 있는 민박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등을 말한다)	주거비, 체험비 등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서

기 본 현 황						
신청분야	□ 임신·출산, 양육 □ 학자금, 전입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						
출산 양육	□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자녀 성명	생년월일	자녀 수	자녀 성명	생년월일	자녀 수
다자녀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구비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자녀 수	자녀 중 째		신청인과의 관계		
	학자금신청	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				
학자금 전입	전입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대학생	학교명			학과명		
	□전입고등학생 장학금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전입대학생 학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정착금·기념품 □빈집정비 지원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문화예술 관람권 □전입대학생 장학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대학생 학자금과 생활관비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 고등학생학자금 납입영수증,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자택 : 핸드폰 :	
거창군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신혼부부 해당)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출 산 일 (출산가정 해당)					
	전입신고일 (전입세대 해당)					
임차·구입 주택현황	소 재 지				소 유 자	
	임차·구입 금액(원)				임차면적 (제곱미터)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전세자금인 경우) 3. '주택전세·구입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 날인) - 주택전세·구입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구입 주택 등기부등본 1부(구입자금인 경우)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3.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목적: 청년 주택 전세·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인: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나. 신청인: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창군이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칸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년 주택 전세·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과 출산 지원
   가. 출산 축하금
   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다. 임신축하 기념품 등
2.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양육지원금 지원 등
3.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가. 전입정착금
   나. 빈집정비 지원
   다.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학생 생활관비 등 지원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가. 국적취득자 지원
   나.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